

우수한 기술력과 탁월한 성능의 제품을 보유한
4차산업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과 제품에 대한 인증

2020년 연간 운영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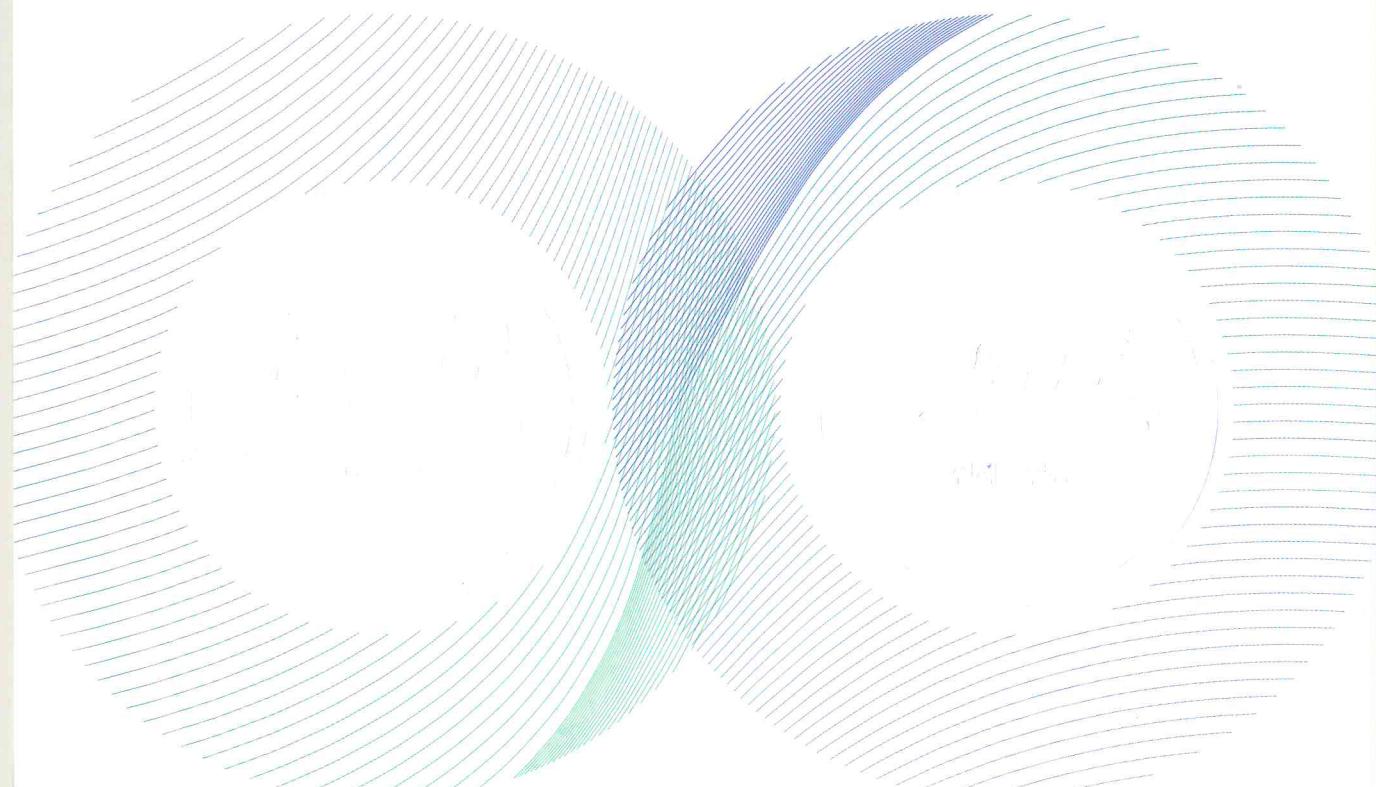
신기술(NET)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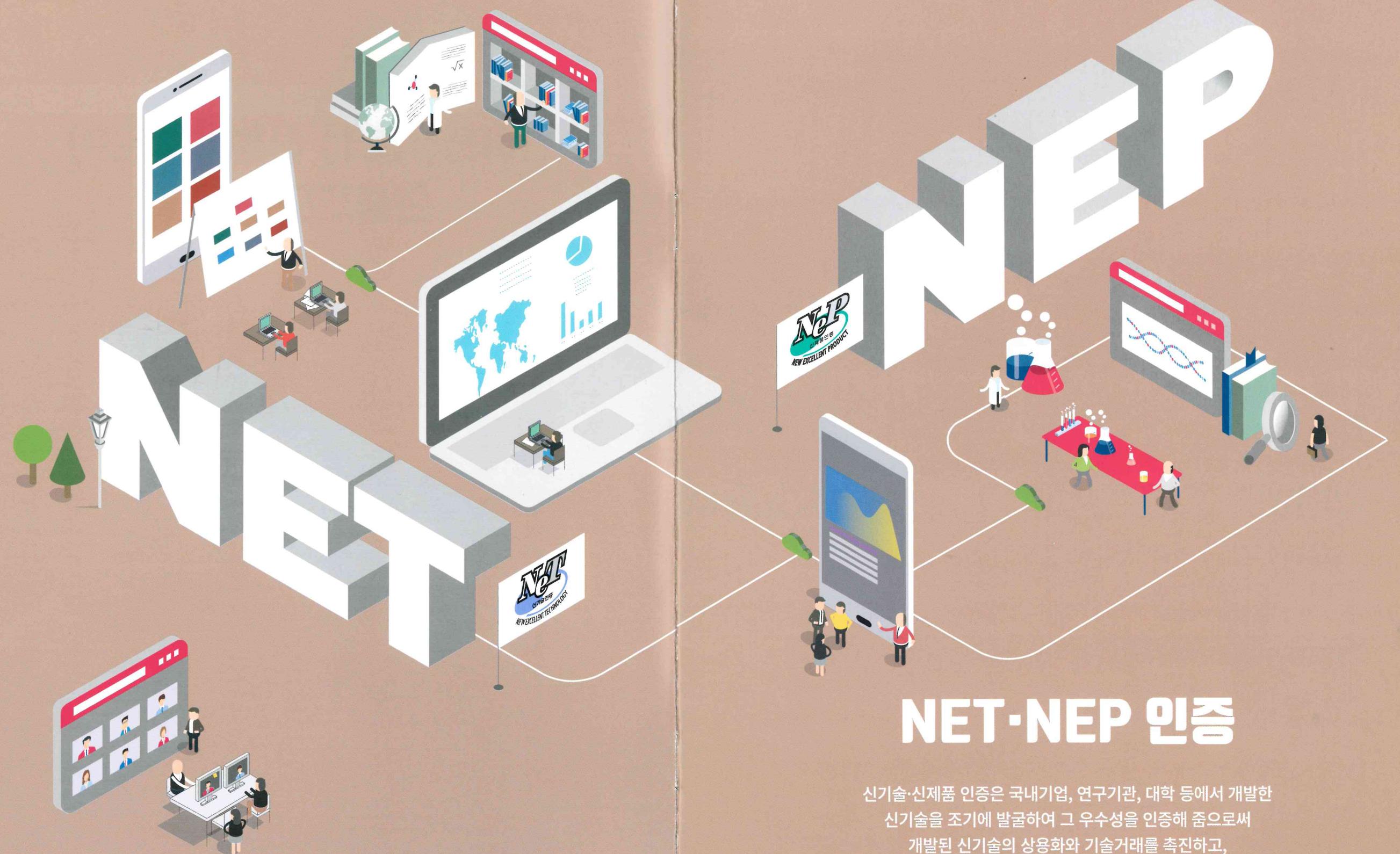
구분	제1회	제2회	제3회
신청접수	'19년 12월 ~ 1월	4월 ~ 5월	7월 ~ 8월
심사	1월 ~ 5월	6월 ~ 9월	8월 ~ 12월
인증서 수여	5월중	9월중	12월중

신제품(NEP) 인증

구분	제1회	제2회	제3회
신청접수	'19년 11월 ~ 12월	3월 ~ 4월	6월 ~ 7월
심사	1월 ~ 5월	5월 ~ 9월	8월 ~ 12월
인증서 수여	5월중	9월중	12월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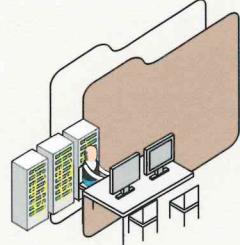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제도 소개





NET·NEP 인증

신기술·신제품 인증은 국내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을 창출하고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신기술(NET) 인증제도



신기술(NET) 인증은 개발한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여 인증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초기 시장 진출에 도움을 드립니다.

1. 운영목적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함

2. 시행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18조의3
-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산업부 고시 제2017-145호)』
- 인증기술의 표시는 「New Excellent Technology」를 약식으로 표현한 「NET마크」 사용

3. 운영주체

-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관	업무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법령 제정·개정 및 평가기관 지정 신기술에 대한 제반 인증서 발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증된 기술(제품)에 대한 상용화 지원 등 연계지원시책 강구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심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정 및 관리 심사결과 발표, 인증서 발급 및 인증기술 홍보 인증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연계지원제도의 발굴 및 제도화 기타 운영 및 사후관리

4. 신기술(NET) 인증 신청

■ 신청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 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시장에 제품을 출하 및 판매)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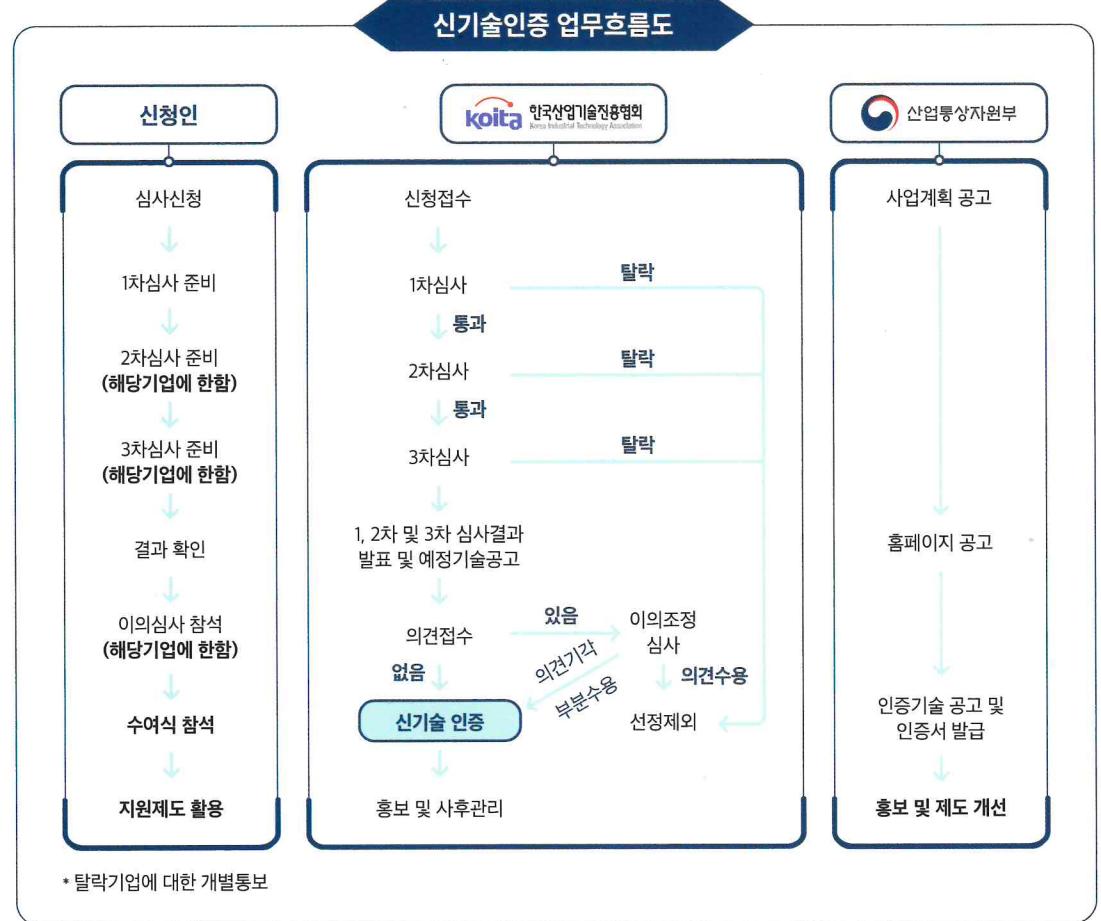
■ 접수절차

- 온라인 접수 후 [www.netmark.or.kr]
- 우편(또는 방문) 제출(접수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및 신청서식

- 모든 구비서류는 온라인 제출(www.netmark.or.kr을 통해 파일업로드)
- 신청서식은 [http://www.netmark.or.kr - 정보센터 - 서식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음
 - ※ 온라인 접수 후 2개 서류 원본 우편(또는 방문)제출
 - 1) 신청서식 ①번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 (출력 후 대표 날인)
 - 2) 구비서류 ④번 공인시험성적서 원본
 - ※ 마감일 18:00까지 온라인 접수와 우편(방문) 제출이 모두 이루어져야 접수가 완료됨
 - ※ 제출서류(원본포함)는 평가실시 이후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운영요령 제3조 제6항)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① 신기술(NET)인증 신청서(온라인 작성 후 출력, 원본 우편 (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③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특허자료 제출시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해당시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⑤ 국제표준기구 인증서(ISO9001, IATF16949 등) 또는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⑧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해당시 필수제출)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인증될 수 있음 공동개발 기술(공동특허 포함)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동 기술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날인하여 첨부해야 함 공동신청의 경우 신청기관 모두 각 기관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핵심기술의 개발에 해당 기관별 직접적 기여부분(기관당 최소 30% 이상)이 확인되어야 함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5. 심사기준 및 절차

■ 신기술 심사기준

-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신기술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인지 여부
-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인지 여부
-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에 있어서 개발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심사는 1, 2, 3차에 걸쳐 실시하고 연간 3회 운영

- 1, 2차 및 3차심사 후 신기술(NET) 예정기술 공고를 통해 의견을 접수하여, 의견이 접수된 기술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의조정심사 실시
※ 의견이 접수되지 않은 기술은 신기술(NET) 인증기술 공고 및 인증서 수여
- 인증기간 : 1~3년(1회에 한해 3년 이내 연장 가능)

• 심사구분

구분	위원회	심사방법	심사범위	비고
1차 심사	전문 분과위원회	서류·면접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와 기술성, 경제성, 경영성 등에 대한 서류 및 면접, 시제품 확인 심사 상위심사 상정과제 선정과 기술명칭 조정 및 인증 기간 부여 	심사장소(시간) 지정 통보
2차 심사	전문 분과위원회	현장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심사 결과 기술개발 현황, 생산시설, 시제품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설치현장이나 개발 및 현장의 확인을 통한 심사 3차심사 상정기술 선정 상정기술의 기술명 조정 및 인증기간 부여 	1차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기업에 한해 개별 통보
3차 심사	종합 심사위원회	종합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2차심사 결과에 대한 최종확인(선정·탈락) 선정기술에 대한 인증기간 확정 인증취소에 대한 심사 	전문분과 위원장의 종합회의 심사
이의 조정 심사	전문 분과위원회	서류·면접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기술 인증예정기술에 대해 이해관계 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해당기술에 대해 재심사 ※ 탈락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운영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관/ 소명기관 참석

6. 신기술(NET)인증 활용 지원제도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구매지원

- 신기술 제품의 수의계약 지원
- 자금 및 우선구매 지원(산업통상자원부)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정대상(중소벤처기업부)
- 조달우수제품 지정대상(조달청)



■ 학연 공동 기업 R&D 지원사업

- 신기술(NET) 상용화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업당 2억원 이내 15개 내외 기업선정(최대 1년 지원)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 혁신형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술기업을 선별, 민간금융기관에서 보증서 없이 사업화 자금을 신용으로 지원(기술보증기금)

■ 정부 R&D사업 신청 시 우대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지원
-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산업통상자원부) : 우수한 기술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ATC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 지원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에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개발된 부품·소재의 상용화 및 시장진입 촉진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중소벤처기업부)

■ 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 전문연구요원제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 석·박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연구경력의 단절없이 지속적으로 연구기회를 부여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관련사업

- 수출역량강화사업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진출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수출관련 교육, 디자인, 글로벌 브랜드 개발 등 지원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 수출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R&D, 해외마케팅, 수출금융을 우선참여 또는 우대지원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 수출유망중소기업을 매년 발굴하여,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
-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원사업 : 해외진출 지원 전문 컨설팅사 또는 마케팅회사 등을 통하여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해외진출 지원
- 수출인큐베이터 : 해외주요 교역 중심지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조기정착 지원 및 수출 확대 촉진
- 국방절충교역 지원사업 : 중소기업 제품 Pool을 구성하여 절충교역 협상 시 활용,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 조세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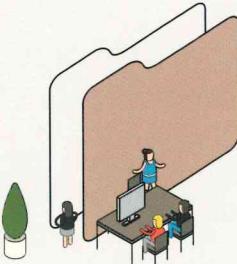
- 신기술(NET)인증 기술을 기업화 하기 위한 사업용 투자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 당해 설비투자 금액의 6/100 세액공제

■ 기타

- 신기술기업협의회 운영
- 신기술(NET)인증 관련 홈페이지 운영(<https://www.netmark.or.kr>)
- 홍보자료 및 책자발간

신기술(NET) 인증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일정 등은
신기술(NET)인증 홈페이지(<https://www.netmark.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제품(NEP) 인증제도



신제품(NEP) 인증은 제품의 성능과 품질에 대한 우수성을 입증하여 인증제품의 기술개발 촉진과 판로 확대에 도움을 드립니다.

1. 운영목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조성**

2. 시행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산업부 고시 제2019-46호)」
- 인증제품의 표시는 「New Excellent Product」를 약식으로 표현한 「**NEP마크**」 사용

3. 운영주체

-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관	업무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관련법령 제정고시 및 평가기관 지정신제품에 대한 인증서 발급(산업통상자원부장관)인증 제품에 대한 연계지원사업 강구(금융·기술 및 홍보지원)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심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정 및 관리심사결과 발표, 인증서 발급 및 인증제품 홍보인증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연계지원제도의 발굴 및 제도화기타 운영 및 사후관리

4. 신제품(NEP)인증 신청

■ 신청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에 한함

■ 신청 제외대상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 신청자격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접수절차

- 온라인 접수 후 [www.nepmark.or.kr]
- 우편(또는 방문) 제출(접수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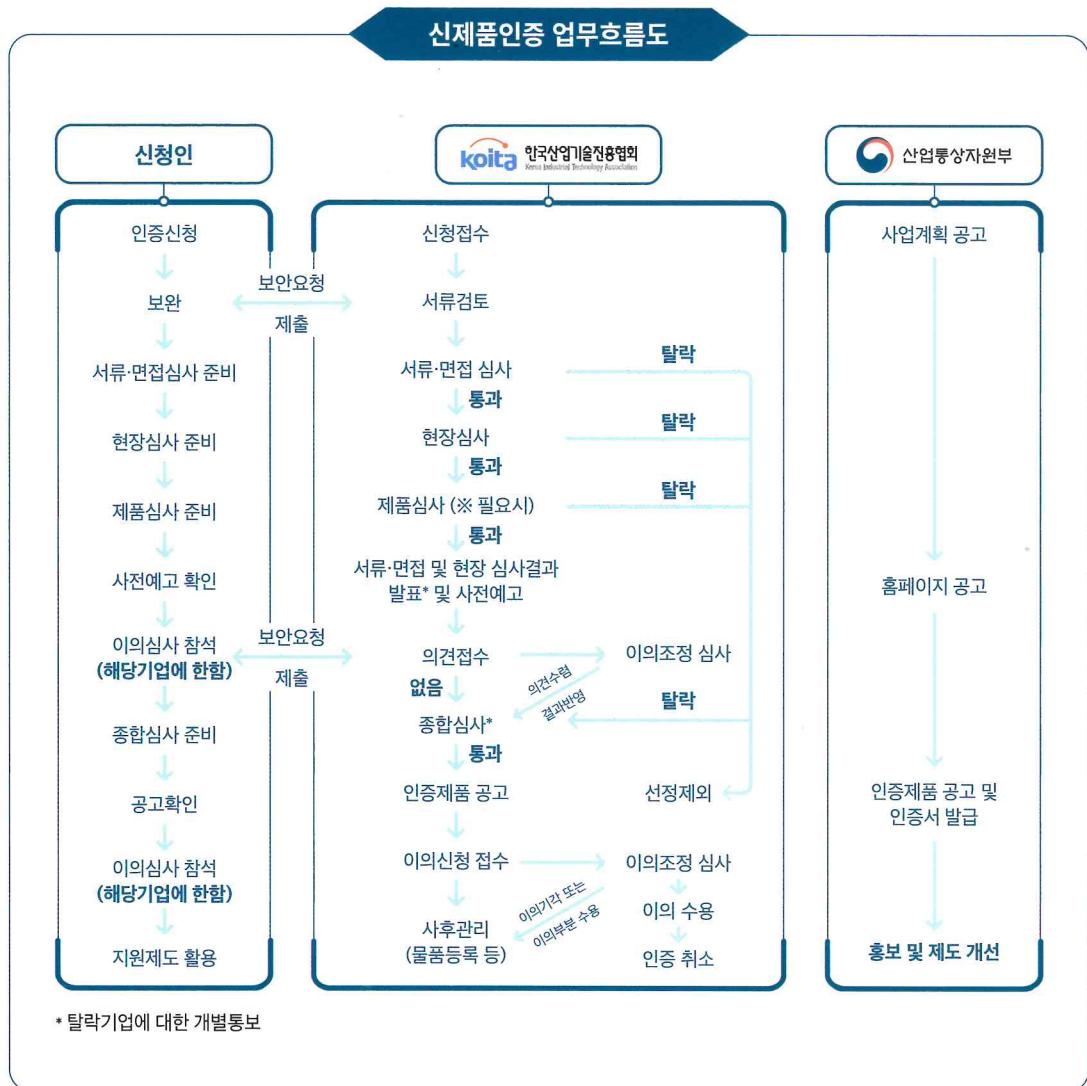
■ 제출서류 및 신청서식

- 모든 구비서류는 온라인 제출(www.nepmark.or.kr를 통해 파일업로드)
 - 신청서식은 [<http://www.nepmark.or.kr/-정보센터-서식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음
- ※ 온라인 접수 후 2개 서류 원본 우편(또는 방문)제출

- 신청서식 ①번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 (작성 후 대표 날인)
 - 구비서류 ⑥번 공인시험성적서 원본(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 성적서)
- ※ 마감일 18:00까지 온라인 접수와 우편(방문) 제출이 모두 이루어져야 접수가 완료됨
- ※ 제출서류(원본포함)는 평가실시 이후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운영요령 제3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 서식	① 신제품(NEP)인증 신청서(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8호 서식) ③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각 1부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4.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5.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체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7.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8. 「발명진흥법」 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9.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10. 「특허법 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특허자료 제출 시 원본과 청구항, 요약부분까지 첨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 서류	④ 「산업표준화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ISO9001, IATF16949,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등)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 ⑥ 신청제품 관련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반드시 신청모델명 또는 신청제품명이 명시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우편(방문) 제출 필수) (운영요령 제7조(제품심사)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12개월 이내) ⑦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신청모델명 또는 신청제품명이 명시된 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모델명이 미기재된 증명서의 경우 상동함을 증빙 가능한 서류 포함)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⑩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참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음 •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출시 등록원부, 청구항을 반드시 제출하여 특허권을 입증해야 함 • 공동개발 기술(공동특허 포함)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 개발한 기관에 동 기술(제품)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 (공동특허의 경우 전용실시권 설정)를 작성·날인하여 첨부해야 함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음 • 신청서 안에 신청모델을 모두 명시해야 함 	



5. 심사기준 및 절차

■ 신제품 심사기준

-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일 것
-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을 것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 기술적 파급효과가 클 것
-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

■ 심사는 서류·면접, 현장, 제품, 종합심사를 통해 실시하고 연간 3회 운영

- 서류·면접, 현장, 제품심사 후 신제품(NEP)인증 사전예고를 통해 의견을 접수하며, 이해관계인 및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심사 실시
- 인증기간 : 3년(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 심사구분

구분	위원회	심사내용	비고
서류 면접 심사	인증평가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류의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해 개발기술 및 제품의 독창성과 난이도, 기술적 수준, 경제적 파급효과 등 심사 • 상위심사 상정과제 선정과 제품명칭 조정 등 	심사장소(시간) 지정통보
현장 심사	현장심사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국내·외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하청공장 포함) 또는 신청제품이 설치된 장소 등에서 서류·면접심사 결과의 확인 • 품질보증시스템 점검을 통해 동일한 신청제품이 지속적으로 제조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 현장심사 보고서 작성 	서류·면접 심사결과에 따라 대상기업에 한해 개별 통보
제품 심사	인증평가 위원회/ 현장심사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제품에 대한 품질평가기준(품질시험항목, 시험항목의 중요도 및 시험방법 포함)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시험·분석·평가 등 실시 • 시험·분석·평가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검사기관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전파법」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12개월 이내 공인시험성적서 제출 시 면제
종합 심사	인증심의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면접, 현장, 제품심사 결과에 대한 최종확인 • 신제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이의신청, 인증취소,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의·의결 	인증평가위원장의 종합회의 심사
이의 조정 심사	인증평가 위원회 / 인증심의 위원회	<p>1) 사전예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면접, 현장, 제품심사 결과 적합 판정된 신청제품에 대한 사전 예고를 통해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이의조정을 위한 인증평가위원회 심사 실시 <p>2) 이의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제품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제출서류의 검토결과를 인증심의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 필요시 인증평가위원회 및 현장심사 실시 ※ 탈락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운영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관/ 소명기관 참석

• 의무구매대상 공공기관

구분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44개 기관(18부, 4처, 4위원회, 17청, 1실)
지방자치단체	243개 기관(광역시/도 17, 자치구 226)
교육자치단체	17개 기관
정부산하단체	151개 기관

- 구매촉진 :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조달청 물품분류 번호 기준)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산촉법 시행령 제23조)
- 인증제품 구매요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제품(NEP)을 구매 요청하는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nepmark.or.kr)를 통해 인증신제품 목록을 편람 또는 인증신제품 정보관리시스템(www.buyinp.or.kr)으로 제공(산촉법 시행령 제25조)
-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 : 공공구매책임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인증신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의 구매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해당연도의 구매할 예정인 인증신제품의 목록을 공고(산촉법 시행령 제27조)
- 구매실적통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종합결과를 감사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통보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산촉법 시행령 제28조)

■ 기타 인증제품 활용 지원제도

- 인증제품 수의계약지원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정대상(중소벤처기업부)
-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 시 우대(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가점(중소벤처기업부)
- 자본재공제조합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 조달우수제품 지정대상(조달청)
- 세계 일류 상품 선정 우대(산업통상자원부)
- 신뢰성기반 활용 자원사업 가점(산업통상자원부)

신제품(NEP) 인증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일정 등은
신제품(NEP)인증 홈페이지(<http://www.nepmark.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신제품(NEP)인증 활용 지원제도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제도 안내

- 시행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8조 및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